

제328회 임시회
기획경제위원회

정관 변경 보고

2025. 2.



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

1. 변경 사유

-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당연직 이사 명칭 변경 (안 제14조 제1항)
 -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“안전총괄관”에서 “재난안전기획관”으로 변경

3. 시 행 일

-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조표

현행	개정안
<p>제14조(이사의 선임)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, 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히 이사가 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및 <u>안전총괄관</u> 2.~3. (생략) ②~④ (생략)</p>	<p>제14조(이사의 선임)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, 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히 이사가 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및 <u>재난안전기획관</u> 2.~3. (현행과 같음) 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